

제417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25. 3. 24. ~ 4.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417회 임시회

(2025. 3. 24. ~ 4. 3.)

제417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을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면 대이변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도전경성의 정신으로 일궈낸 값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험난했던 도전의 길을 동행해 주신 위대한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지방도시 연대의 놀라운 힘을 하계올림픽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힘은 향후 지방의 시대, 도시의 시대를 여는 첫 단추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새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여정은 지금부터입니다.

하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실현하도록 도민과 함께 땀방울이 흘러넘치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그 땀방울은 우리의 경쟁상대를 넘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뒤흔들어 놓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분열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위축되고, 민생은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생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IMF와 코로나19 팬데믹보다도 더 힘들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입니다.
획기적인 정책으로 민생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도 어렵습니다. 건설경기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들이 한파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국 불안과 내수 부진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위기가 더욱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정책의 하나로 전북형 주 4일 출근제가 시행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민간기업으로의 확대 여부입니다.
민간기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 4일 출근제가 확산되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2025년 경영계획으로 학력신장·책임교육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북교육이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학교 체육 분야가 빠진 점은 매우 아쉬움이 큼니다.
학교 체육교육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학교 체육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난해 10개 학교에

이어 올해 8개 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됩니다.

내년에는 13곳의 학교가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교육청은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주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문제사안의 경우 반드시

보완 또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진행상황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이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우리는 잠자고 있던

도전정신을 깨웠습니다.

도전하면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연대와 협력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도전의 가치를 빛내 주는 것은 바로 연대와 협력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위기가 오더라도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 긴밀한 소통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가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의회와 행정이 기본과 원칙을 되새기며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 승 우

목 차

제417회 임시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8
2. 회기 및 운영	8
3. 의 사 일 정	9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16
2. 처 리 현 황	17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87
2. 처 리 현 황	87
3. 위원회별 처리현황	88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89
2. 202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89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90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90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25. 3. 17.(월)
- 집회 일자 : 2025. 3. 24.(월) 14:00
- 집회 사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2. 회기 및 운영(제12대 후반기)

- 회 기 : 2025. 3. 24. ~ 4. 3.(11일간, 2025년 : 22일, 총누계 356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4일(연 누계 : 6, 총 누계 76)
 - 상임·특별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방	교육	특별
제417회 임시회	9	1	2	2	1	2	1	0
2025 년도	33	2	6	7	6	7	5	0
총 누 계	132	9	26	25	24	25	23	8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3.24.(월) 14:00	<p>〈 제1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회 식 1.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6.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9.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3.25.(화) 10:00	<p>〈 제2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질문·일괄답변(5명) 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②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 ③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 ④ 기획행정위원회 최 형 열 의원 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 만 기 의원 ○ 보충질문·답변 	
3.26.(수) 10:00	<p>〈 제3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질문·일괄답변(5명) ①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 ②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 ③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 ④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 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 ○ 보충질문·답변 2. 본회의 휴회의 건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 3(목) 14:00	<p>〈 제4차 본회의 〉</p> <p>○ 5분 자유발언(10명)</p> <p>- 박정희 의원, 최형열 의원, 이정린 의원, 김이재 의원, 김성수 의원, 이병철 의원, 이수진 의원, 권요안 의원, 나인권 의원, 김정기 의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4.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 15.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17.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3.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28.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29.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3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31.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32.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33.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35.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 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36.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37.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8.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39.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0.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5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3.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6.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축구 건의안 57.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축구 건의안 58. 소농직불금 확대 축구 건의안 59.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축구 건의안 60.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축구 건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3. 24.(월) 10: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결의안 ○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행정 위원회	3.24.(월) 본회의 종료 직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간담회 ○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 ○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7.(목)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27.(목) 1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 ○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농업복지 환경 위원회	3. 24.(월) 15: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7.(목) 13:3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경제산업 건설 위원회	3. 28.(금)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심사 -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3. 28.(금)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 채택의 건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3. 24.(월) 15:2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7.(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 옛 도지사관사(하안양옥집) 	
교 육 위 원 회	3. 27.(목)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7.(목)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익산학생교육문화관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417회 (2025. 3. 24.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68	36	19	13	4		18		10	4		
	누 계	1418	686	328	351	7	7	0	361	52	231	81	
의 회	소계	금회	45	32	18	10	4				10	3	
		누계	850	533	305	223	5	7	0	5	0	231	74
	의원	금회	45	32	18	10	4				10	3	
		누계	813	523	303	215	5	0	0	0	0	228	62
	위원회	금회											
		누계	37	10	2	8	0	7	0	5	0	3	12
도지사	금 회	20	2	1	1			17			1		
	누 계	437	94	15	79	0	0	0	318	21	0	4	
교육감	금 회	3	2		2			1					
	누 계	131	59	8	49	2	0	0	38	31	0	3	

2. 처리현황

○ 총 괄

제417회 (2025. 3. 24.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68	67	61	4	0	1	0	1	3	
	누계	1418	1408	1275	83	0	23	0	25	16	
조 례 안	소계	금회	36	35	33	2		0		0	1
		누계	686	681	616	41	0	5	0	17	7
	의회	금회	32	31	29	2					1
		누계	533	529	483	31	0	0	0	13	6
	도지사	금회	2	2	2						
		누계	94	94	81	6	0	3	0	4	0
	교육감	금회	2	2	2						
		누계	59	58	52	4	0	2	0	0	1
규 칙 안	금회										
	누계	7	7	7	0	0	0	0	0	0	
규 정 안	금회										
	누계	0	0							0	
승인동의안	금회	18	18	14	2		1		1		
	누계	360	360	310	25	0	18	0	7	0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53	53	38	15	0	0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10	10	10						2	
	누계	231	226	223	2	0	0	0	1	9	
기 타 의 안	금회	4	4	4							
	누계	81	81	81	0	0	0	0	0	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55	36	0	0	18	0	0	1	55	48	4	1	1	0	1
	누계	1115	676	0	0	356	52	24	7	1105	971	83	23	22	0	17
의회운영 위 원 회	금회	2	2							2	2					
	누계	41	17	0	0	0	0	24	0	36	30	4	0	0	0	7
기획행정 위 원 회	금회	11	8			3				11	11					
	누계	210	151	0	0	58	0	0	1	208	194	8	0	6	0	3
농업복지 환 경 위 원 회	금회	8	8							8	8					
	누계	198	146	0	0	52	0	0	0	198	181	2	3	11	0	1
경제산업 건 설 위 원 회	금회	16	2			13			1	16	13	1	1	1		
	누계	277	116	0	0	158	0	0	3	277	237	21	15	3	0	1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금회	3	2			1				3	3					
	누계	148	98	0	0	50	0	0	0	147	134	8	3	2	0	1
교 육 위 원 회	금회	15	14			1				15	11	3				1
	누계	189	148	0	0	38	0	0	3	187	158	25	2	0	0	4
특 별 위 원 회	금회															
	누계	52	0	0	0	0	52	0	0	52	37	15	0	0	0	0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미			
		계	조	규	규	승	예	건	기	계	가결		부			철	료	상
											원	수						
총	금회	13						7	3	13	13							
	누계	304	10	7	0	5	0	204	75	304	303	0	0	1	0	0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미			
		계	조	규	규	승	예	건	기	계	가결		부			철	료	상
											원	수*						
총	금회	62	35			16		7	4	62	58	4						
	누계	1352	656	8	0	335	52	220	81	1370	1269	83	13	5	0	0		

* 위원회 수정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희수·김명지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3.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3호

제안이유

- 초(超)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超)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초(超)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나. 초(超)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성수·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9호

□ 제안이유

-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 중 미서훈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성수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3.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7호

□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일과 휴식을 결합한 워케이션이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면서 국내 관광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휴양연계관광 사업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실현하고 도내 관광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일·휴양연계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형열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2호

□ 제안이유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기준을 준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 25. 1. 1.)에 따라 감면 추진 중인 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차량 대체 취득시 채권 매입 면제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매입의무 면제대상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가 정의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로 개정
- 2) 다자녀 양육자가 대체 취득한 차량의 경우, 등록 후 60일 이내에 이전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면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함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0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72호

□ 제안이유

가. 추진배경

- 2024년 조례사후평가 종합결과 개정 권고[노사협력과-3986(2024.6.17.)]

나. 입법에 따른 효과

- 조례 목적 및 정의 명확화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반복되는 단어를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

나. 안 제2조(정의)

- 제4호의 서술식 표현을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문장을 정비함

의안번호 135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73호

□ 제안이유

가. 추진배경

- 2024년 조례사후평가 종합결과 개정 권고[노사협력과-3986(2024.6.17.)]

[문장정비 권고사항]

-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이라는 표현이 흡연·음주를 약물의 하나처럼 오인할 수 있어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으로 비 권고

나. 입법에 따른 효과

- 조례 제명 및 목적 명확화로 학생에 대한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내실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 권고에 따라 문장 정비

나. 안 제1조(목적) : 권고에 따라 문장 정비

다. 안 제2조 ~ 제13조 : 권고에 따라 문장 정비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 외 2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

- 취득 (신축)

(단위 : m², 천원)

순	기관명	사 업 명	면적		사업비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계
1	임실 교육지원청	임실 반려누리 학습센터 신축	2,500	877.5	196,250	2,990,319	3,186,569
2	고창 교육지원청	가칭 ‘고창 미래교육센터’ 신축	6,271	2,800	398,933	16,295,055	16,693,988
합계			8,771	3,677.5	595,183	19,285,374	19,880,557

- 변경 (사업비 변경)

(단위 : m², 천원)

순	기관명	사업명	구분	변경사항			사업비	비고
				토지	건물	공작물		
3	유초등 특수 교육과	가칭 ‘구림유아 종합학습분원’ 신축(변경)	당초	3,984	2,015	13	9,492,434	· 사업내역 일부 변경 및 물가상승률 반영, 순창군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비 46% 증가
			변경	4,526	2,087.94	26	13,855,249	
			증감	542	72.94	13	4,362,815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경관법」 제7조에 따라 2020년 수립된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이 제15조에 따른 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 나.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다. 경관구조의 설정 및 경관사업의 추진 등 실천방안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한정수 국주영은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2.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2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

주요내용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3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슬지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4호

제안이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청년의 직접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격상 및 위촉직 확대(안 제8조)
- 청년정책포럼단 명칭 변경(안 제10조)
- 청년 복지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16조)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형열·정종복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6호

□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법질서 의식 확립을 기하고 사회 공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지부 및 지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보조금 지원 등(안 제3조 및 제4조)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107.5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추경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 타
계			107.5	715	<500>	107.5	107.5	-
① 시군구연구 미래형 특장차산업 전환 지원(국가직접)	'25.~'26.	-	107.5	715	<500>	107.5	107.5	-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6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1회추경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 타
계		60	60	400	<200>	60	140	-
에너지산업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25.4.~12.	60	60	400	<200>	60	140	-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3,14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1회추경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 타	
계		1,500	3,140	7,311	<650>	3,140	3,440	81	
①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	'25.1.~12.	1,500	3,000	6,300	-	3,000	3,300	-
②	남원시 시군구연구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국가직접)	'25.2.~12.	-	140	1,011	<650>	140	140	81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11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1회추경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 타
계			110	367	<330>	110	0	92
①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국가직접)	'25.1~12.	-	110	367	<165>	110	-	92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9,30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 타	
합 계		-	9,300	21,300	<1,800>	9,300	6,200	4,000	
주요 사업비		0	9,300	21,300	<1,800>	9,300	6,200	4,000	
①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화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국가직접)	'23~'26	-	1,800	5,200	<1,800>	1,800	1,600	-
②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	'24~'25	-	1,200	3,800	-	1,200	2,600	-
③	미래 상용차 대응 핵심기술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	'25~'27	-	1,300	1,300	-	1,300	-	-
④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	'25~'27	-	2,000	8,000	-	2,000	2,000	4,000
⑤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 사업	'25	-	1,300	1,300	-	1,300	-	-
⑥	제조기반기술 R&D혁신사업 지원 사업	'25	-	1,100	1,100	-	1,100	-	-
⑦	수요맞춤형 항공산업육성 지원 사업	'25	-	600	600	-	600	-	-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의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500백만원(도비) * 1회 추경 요구 : 50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1회추경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 타
계		0	500	1,000	0	500	500	0
가능성 연구 개발 용 구	25.5~12.	0	500	1,000	0	500	500	0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75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합 계		-	750	3,613	<1,916>	750	750	197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24~'28	-	750	3,613	<1,916>	750	750	197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465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5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 타
계		-	465	5,741	<3,100>	465	465	1,711
①	농기계 다품종 유연생산을 위한 AI 자율제조 기술개발 '24~'27	-	465	5,741	<3,100>	465	465	1,711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공공위탁·대행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및 내용 :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 위탁기간 : 2025. 6. ~ 2030. 12.(6년)
- 소요예산 : 300백만원(2025년)
- 위탁기관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위탁사무 : 바이오산업 재직자에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 및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그린바이오 기업의 산업전환 지원

나. 공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성

- 바이오산업은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다방면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 바이오 인력양성 및 기술사업화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기업 지원 사업 운영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를 조성·운용함으로써 전북형 첨단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 주요내용

- 기금 출자규모 : 24,420백만원

분 야 별	주 요 내 용	총 출자액(단위 : 백만원)		
		계	1차	2차
합 계		24,420	14,645	9,775
지역 모펀드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엔젤투자자 등의 유휴자원을 활용해 지역 모펀드를 조성하고, 구펀드에 재출자해 벤처중소 제공을 위한 펀드 조성	2,900	2,900	-
스케일업 펀드	대규모 자금 조달 연계가 가능한 기관 기업과의 협업으로 지역 창업 벤처생태계의 단계적 도약 부흥을 위한 펀드 조성	7,500	3,575	3,925
세컨더리(유동화)펀드	도내 벤처투자와 회수의 구조적인 선순환 유도 및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안정성 제공으로 중간회수시장 생태계 구축	2,800	1,050	1,750
창업·벤처 지원 펀드	도내 전략산업(푸드테크, 미생물 등)과 신산업(레드바이오, 수소, 재생에너지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적 투자 유도를 위한 펀드 조성	6,920	5,420	1,500
소재·부품·장비 펀드	오픈노베이션 방식의 기술사업화 R&D, M&A 등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투자로 지역 소재·부품·장비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펀드 조성	3,800	1,200	2,600
지역발전 협력 펀드	대·중견기업이 출자하고, 전문 투자사 ^{VC/OC} 가 운영하는 사모방식 벤처펀드 조성으로 스타트업대 중견기업의 오픈노베이션 기반 구축	500	500	-

전북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일자리민생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 경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출산율 제고 및 휴·폐업률 감소
- 나.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전북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사무를 위탁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전북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6. 1. ~ 2025. 12. 31.(7개월)
 - 소요예산 : 450백만원(도비)
 - 위탁사무
 -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제공
 -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기타 전북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
- 다. 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성
 - 소상공인 지원 전문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하여 투입예산 대비 전북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통합재정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5. 1월 ~ 2025. 12월
- 소요예산 : 3,300백만원(도비) * '25년도 본예산 2,900백만원, 증액 400백만원
- 위탁사무
 - (판로개척) 무역사절단, 박람회 참가지원, 수출상담회 등
 - (역량강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통번역 지원 등
 - (경쟁력강화) 수출보험가입 지원,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수출바우처 등
- 수탁기관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나. 법적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 제11조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

다. 위탁사유

- 수출 중소기업 육성 전문 기관으로 수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해외 수출 전문 네트워크를 갖춘 전담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해외판로 확대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의안번호 1375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6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관 운영비		해	당	없	음		
일본 해외사무소 운영	25.1~12.	100	60	60	0	60	0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39호

□ 제안이유

- 녹색제품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바르게 하며, 조례의 자구와 문장 정비로 실효성과 적합성을 확보하여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녹색제품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제8조)
- 다.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0조)
- 라.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 마.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포상 기준 신설(안 제18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0호

□ 제안이유

- 농촌 주민 등이 자조·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위치, 기능, 설치 및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지원센터에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다. 지원센터의 시설 및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라. 수탁자에 대한 지원 근거, 수탁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마.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및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바.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강태창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1호

□ 제안이유

- ESG 경영은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하고 평등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공익 실현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 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6조)
- 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사.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황을 평가하여 우수 공공기관에 인증 부여 및 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 출 자	임종명·윤수봉·박정규 이명연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1호

□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라 다음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함.

- 대상자 : 김진철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7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공무원의 부정·비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감사, 직무감찰 등을 엄정히 수행하는 한편,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고,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됨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의 장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의장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선임내역

구 분	성 명	경 력	비 고
도 의 원 (3명)	김 만 기	· 現 경제산업건설위원	
	김 동 구	· 現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 병 도	· 現 경제산업건설위원	
회 계 사 (1명)	설 유 영	· 現 지음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세 무 사 (1명)	오 제 관	· 現 오제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변 호 사 (1명)	조 영 보	· 現 조영보법률사무소 대표	
전 직 공 무 원 등 (10명)	육 흥 기	· 前 도 관광총괄과장	
	김 대 안	· 前 도 세정과 세정팀장	
	이 관 영	· 前 운영수석전문위원	
	신 회 섭	· 前 도교육청 시설과장	
	황 인 규	· 前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이 윤 오	· 前 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이 수 천	· 前 정읍시 의회사무국장	
	윤 근 배	· 前 도 자연재난과장	
	김 호 덕	· 前 도 해양항만과장	
	강 군 석	· 前 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출연 : 1개 사업 47,500천원(도비)
 - 총사업비 142,500천원(국비 95,000천원, 도비 47,500천원)
 - (목적)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효과)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등 성인학습자들의 디지털 생활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만기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3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인증상품을 도민과 함께하는 우수상품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도 대표상품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용어 변경(안 제명)
- 나.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고 핵심의미가 전달되도록 개정(안 제1조)
- 다.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안 제4조)
- 라. 소관부서명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특정부서로 명시된 부서명을 ‘업무담당 부서’로 개정(안 제5조, 제6조)
- 마.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홍보 및 판촉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폭넓게 개정(안 제17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김슬지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9호

제안이유

-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시간 대상 확대 등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직종 개편('13.12.12.) 이전 용어 등 문구 정비(안 제7조제1~2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 24.7.31.)에 따른 사항 정비(방호원→방호직공무원 등)
- 나. 육아시간 대상 및 사용기간 확대(안 제16조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육아시간 대상 및 사용기간이 확대 됨(5세 이하 자녀, 매일 2시간씩 24개월 내 사용→8세 이하 자녀, 매일 2시간씩 36개월 내 사용)에 따라 조례도 동일하게 반영
- 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관련 규정 정비(별표4)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 24.7.31.)에 따른 사항 정비(민간경력 인정 대상자 세부사항 추가)
- 라.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별표5)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가 확대됨(1일→3일)에 따라 조례도 동일하게 반영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슬지·오은미·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5호

□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 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안 제6조)
- 라.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안 제7조)
- 마.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 바. 농촌 서비스 협약 (안 제9조)
- 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 및 광역지원기관 (안 제 10조, 제11조)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130,087.2백만원(국비 107,586, 도비 22,501.2)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재원별(요구액)				
		계	제1회 추경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30,087.2	130,087.2	130,087.2	107,586	22,501.2	0	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25.1~'26.2	129,103.2	129,103.2	129,103.2	107,586	21,517.2		-
글로벌대학 사업 운영 지원	'25.1~'26.2	984	984	984	-	984	-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가. 전북의 주요 관광자원 홍보 및 소규모 개별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 상품 개발과 전국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단체여행단 유치를 통한 미래 잠재고객 확보 및 전북의 관광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 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등 관광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5. 8. ~ 2026. 12월(1년 5월)
- 위탁업무
 - 전북 관광자원 조사 및 온·오프라인 홍보
 - 전북 관광정보 메일링 서비스 및 홍보물 관리
 -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홍보차량 3.5t)
 - 초·중·고 교육여행단 유치 및 지원
 - 소규모 개별여행객을 위한 여행상품 개발·지원
 -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 등
- 소요예산 : 1,120백만원(도비) * '25년 8~12월 / 42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김동구·전용태 김슬지·임종명·권요안 염영선·서난이 의원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8호

□ 제안이유

- 가.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을 겪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 증가하고 있음
- 나.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외로움 치유 및 예방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외로움 지표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제6조)
- 마.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 사. 외로움치유센터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2호

□ 제안이유

- 지원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안전사고로 유예 및 휴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여 졸업한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고, 지원 범위를 수술비로 한정하고 있어 비급여 항목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신청 절차 중 학교장 추천을 삭제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학생”이란 용어의 뜻을 신설함(안 제2조)
- 나. 지원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안전사고로 유예 및 휴학 중인 학생”에서 “학교안전사고 당시 학생”으로 확대(안 제5조)
- 다. 지원범위를 ‘수술비’에서 ‘수술비용’으로 확대(안 제6조)
- 라. 신청 시 소속 학교장 추천 절차를 삭제하여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제 출 자	김이재·국주영은·이명연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0호

□ 제안이유

- ESG 경영은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하고 평등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실현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의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ESG 경영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서난이·임승식·국주영은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1호

□ 제안이유

-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인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한 도내 여성 및 남성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중단,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명연·나인권·박정규·임종명 김희수·박용근·김성수·김정기 장연국·정종복·김동구·전용태 의원 (찬성의원3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5호

□ 제안이유

- 가.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주기와 빈도, 강도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양상을 보이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나. 이에 복합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3호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휴가 확대와 학습휴가 사용 제한 요건 완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정에 기여하고자 함.
- 기존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에 있는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자구수정 등을 함으로써 자치법규로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복무 선서, 책임 완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 다. 친절·공정, 비밀 엄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라. 당직 및 비상근무, 서류보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 마. 겸임 근무, 파견 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공무원증 발급 등,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12조)
- 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사. 연가계획 및 허가,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 아. 특별휴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자. 공무원외의 국외여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4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로 수정하여 특별적 지위보다는 일반적 지위를 띠는 자문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지역교육 자문의 총괄적 기구성을 강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나. 조례명 변경에 따른 내용, 자구 수정 등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4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따라 지역산업을 정의 함으로써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따른 지역산업 규정(안 제3조)
- 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다. 지역산업의 적용범위를 규정(별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운영숙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5호

□ 제안이유

-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원활한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 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 수립(안 제3조)
- 다.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등 실태조사(안 제4조)
- 라. 실태조사 후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제공 및 개선 방안 권고(안 제5조)
- 마.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병철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보류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 학교가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며 교육의 형평성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기본 원칙(안 제3조)
-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다. 학교의 역할, 교원의 역할(안 제5조~안 제6조)
- 라. 학습자 지원(안 제7조)
- 마.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안 제8조)
- 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안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6호

제안이유

-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다. 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안 제6조)
- 라. 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7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책무로 추가함(안 제3조)
- 다.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등 권고사항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라. 권고사항 추진 시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의안번호 140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8호

제안이유

- 한자 교육 지원계획 중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및 인정도서 보급·활용 방안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함.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9호

□ 제안이유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방연마스크의 비치 설치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화재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제 출 자	운영숙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70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노트북 및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화설비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소화설비의 설치(안 제5조)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6호

□ 제안이유

- 가. 이 조례는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참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게 잼버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 나.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잼버리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행정적 지원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다. 더하여 조례의 효력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가 없어 실효성 및 입법취지가 완성된 상황이므로 이를 폐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의(제2조)
- 나. 참가비 등의 지원(제5조)
- 다. 지원대상(제6조)
- 라. 부당수령 방지(제7조)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7호

□ 제안이유

- 가. 이 조례는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하 “잼버리” 라 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 나. 하지만 잼버리대회의 종료, 그에 따른 조례의 입법취지 및 목적의 달성, 참가자에 대한 행정적·행정적 지원도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다. 더하여 조례의 효력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가 없어 실효성 및 의미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의(제2조)
- 나. 책무(제3조)
- 다. 행·재정적 지원(제4조)
- 라. 다른 조례의 준용(제5조)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8호

□ 제안이유

- 가. 이 조례는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하 “잼버리” 라 한다) 참가자들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 나. 하지만 잼버리대회의 종료, 그에 따른 조례의 입법취지 및 목적의 달성, 참가자에 대한 행정적·행정적 지원도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다. 더하여 조례의 효력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가 없어 실효성 및 의미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의(제2조)
- 나. 참가비 등의 지원(제5조)
- 다. 지원대상(제6조)
- 라. 부당수령 방지(제7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윤영숙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71호

□ 제안이유

- 가. 이 조례는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 교류 및 체험활동 확대 등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 나. 하지만, 조례의 효력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조례 존치에 따른 의미가 소멸된 상황
- 다. 또한, 잼버리대회의 종료, 그에 따른 조례의 입법취지 및 목적의 달성, 참가자에 대한 행정적·행정적 지원도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의(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
- 다. 교육감의 책무(제4조)
- 라. 참가비 등의 지원(제5조)

의안번호 1407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 출 자	의장		제 출 일 자	2025. 3. 1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위원 선임(안)

구 분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비고
현 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임 종 명	
변 경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 성 수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 (찬성의원7명)		제 출 일 자	2025. 3.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3.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대전관·진주관·대구관이 설립 추진 중으로 호남권은 전무한 상황임.
- 현대미술관 분관의 가치는 단순히 미술관을 넘어 전북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갖고 있음.
- 그간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분류됐지만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 총 76곳 중 50곳이 광주·전남에 있을 만큼 호남 속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전북도민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임승식 의원 (찬성의원12명)		제 출 일 자	2025. 3.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3.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증가로 인한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정린·임승식·권요안 국주영은·오은미 의원 (찬성의원 5명)		제 출 일 자	2025. 3.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3.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농협중앙회는 현행법상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는 농업·농촌 현장에서 농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며 지역 농정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농업이 주 산업인 지역에 위치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산업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발전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명실공히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임.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농도이자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서난이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3.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시점에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이 2년 또는 4년 후,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이면서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오는 6월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음
- 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즉각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3. 24.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 3월 7일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로 또 다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은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국력 소진이 심각해지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지연되면서 국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으며,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2.3. 내란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헌법수호기관이자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려는 것임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강태창 의원 (찬성의원 22명)	제 출 일 자	2025. 3.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에 전국적으로 무려 47개 기초단체가 신청서를 냈고 남원을 비롯한 3곳의 1차 후보지가 결정됐음.
- 남원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전라충청경상을 잇는 교통요충지이며, 해당 부지의 99%가 국유지로 후보지 중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이남 지역의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 치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군산항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으로, 국내외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군산항의 저수심 문제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현재 군산항의 모든 부두가 계획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2부두는 지난 10년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또한, 장마철 이후 금강 하구둑에서 대량의 토사가 밀려 오는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준설이 불가피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준설 예산과 규모는 매몰되는 토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의 어려움은 물론, 군산항을 기항하는 화주와 선사의 감소로 인해 물동량 창출이 저해되고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군산항의 저수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지역 경제와 국가 물류의 역할을 담당하는 군산항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용근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3.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정부가 지난해 말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통해 시사한 소농직불금 축소 방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해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음
- 나. 정부는 소농직불금이 고령 농민의 은퇴 지연과 농지 분할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소농직불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보완할 정책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소농 보호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
- 다. 소농직불금은 농가소득 재분배와 농촌 내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해온 핵심 수단으로, 이를 축소하는 것은 2020년 도입된 소농직불금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농촌 경제와 공동체를 더욱 위축시킬 것임
- 라. 소농은 경제적 충격에 더욱 취약하며, 농업 외 소득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농직불금 확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함에 따라 소농직불금 확대를 촉구하기 위함임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정수·임승식·권요안·국주영은 오은미·이정린·오현숙·김희수 이병도·장연국·김만기·김정기 의원		제 출 일 자	2025. 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소나무재선충병은 집단 고사목이 누적되어 산불을 야기할 수 있고, 토양 지지력이 약해져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크며, 또한 금강소나무림,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주요 소나무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이재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국무총리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첫 전국단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에서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28.1%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나.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교육과 의료 등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청소년 자살률의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다. 이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고 상담·치료까지 연계되는 시스템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하도록 건의하기 위함임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25. 2. 22. ~ 4. 3.)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의 복지	환경	산업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통	도시 계획	건설	건축	기타
금회	5	1					4							
2025년 누계	6	1					4							1

○ 제출자별

구분	계	인원별					기관단체
		소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회	5	4	4				1
2025년 누계	6	5	5				1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리별					처리중
		소계	처리	불수리	취하	타기관 이송	
금회	5	5	5				
2025년 누계	6	6	6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2대)

(2022. 7. 1. ~ 2025. 4. 3.)

구분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비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245	245	245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2	12	12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11	11	11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9	9	9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5	15	15			
	교육위원회	70	70	70			
	기 타	128	128	128			
금회	소 계	6	6	6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	1	1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4	4	4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교육위원회						
	기 타	1	1	1			
누계	소 계	251	251	251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3	13	13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11	11	11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13	13	13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5	15	15			
	교육위원회	70	70	70			
	기 타	129	129	129			

Ⅳ.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5. 3. 24. ~ 2025. 4. 3.)

기관별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율(%)	비고
	계	금회	59	59		100
누계		800	800		100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46	46		100	
	누계	605	605		100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금회	13	13		100	
	누계	195	195		100	

2. 2025년 위원회별 요구사항(횟수별)

(2025. 3. 24. ~ 2025. 4. 3.)

기관별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계	금회	59	21	8	8	13	7	-
누계		800	185	122	147	197	125	-	24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46	17	7	6	10	4	-	2
	누계	605	165	92	126	168	36	-	18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청	금회	13	4	1	2	3	3	-	-
	누계	195	20	30	21	29	89	-	6

3. 제12대의회의원요구및제출현황(횟수별)

(2022. 7. 1. ~ 2025. 4. 3.)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고
합계	1,905	1,905		
전북특별자치도	1,449	1,4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56	456		

4. 제12대의회의위원회별요구상황(횟수별)

(2022. 7. 1. ~ 2025. 4. 3.)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1,905	396	368	365	389	341	2	44
전북특별 자치도	1,449	349	292	324	348	102	2	32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456	47	76	41	41	239	-	12

5. 제12대의회의위원회별요구상황(건수별)

(2022.7.1.~2025.4.3.)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4,378	947	848	837	1,004	688	4	50
전북특별 자치도	3,463	865	692	740	936	188	4	38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915	82	156	97	68	500	-	12